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6. 14. 제천시장  
나. 회부일자 : 2006. 6. 15.  
다. 상정일자 : 2006. 6. 21.(제124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박성웅)

가. 제안사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항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함(제51조 신설)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이 가면대상에 추가되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제2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후준)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205.7.13 법률 제7589호)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 11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사항으로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의 범위내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행정적·절차적 하자는 없음.

### 4. 질의답변 요지

#### 가. 질의요지

“없 음”

#### 나. 답변요지 (세정과장 박성웅)

“없 음”

### 5. 소수의견

“없 음”

### 6. 토론요지

“없 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불임서류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